

## 행정처분조서

상호 및 대표	대상업종 및 등록번호	소재지									
(주)산호씨앤디 대표 김용식	토목건축공사업 01-0430	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0 지하3층 (삼성동)									
조사동기	근거	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-6389(2017.4.25.)호, 「중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및 공고」									
	내용	<p>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</p> <p>건설업 등록기준(자본금) 미달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(2017.9.15.)까지 미달사항 미보완</p>									
행정처분 세부내역	조사결과	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									
	처분근거	<p>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</p> <p>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의2, 제3호의3, 제4호부터 제8호까지, 제8호의2,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</p> <p>3의2.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</p>									
	법정제재	등록말소									
	행정처분 현황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최근 3년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현황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처분일자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위반사항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처분내역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처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7.04.25</td> <td>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업정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7.05.01.~2017.09.15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처분일자	위반사항	처분내역	처분	2017.04.25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	영업정지	2017.05.01.~2017.09.15.
	처분일자	위반사항	처분내역	처분							
2017.04.25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(자본금)	영업정지	2017.05.01.~2017.09.15.								
처분	등록말소	2018.4.20.									
증거서류	위 조사동기 관련 공문 등										